

외국환거래추가약정서(Usance 송금 거래용)

■ 개정 시행일 : 2025년 10월 10일

■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 약관의 적용 여부 : 적용

■ 주요 변경내용 : 송금 가능통화 추가

현 행		개 정 (안)		개정사유
본인은 하나은행(이하"은행"이라 합니다)과 체결한 년 월 일자 외국환거래 약정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. 은행직원의 설명을 들으시고 해당되는 거래 방식의 앞에 있는 "□"안에 "v"표 하시기 바랍니다.		본인은 하나은행(이하"은행"이라 합니다)과 체결한 년 월 일자 외국환거래 약정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. 은행직원의 설명을 들으시고 해당되는 거래 방식의 앞에 있는 "□"안에 "v"표 하시기 바랍니다.		
거래 방식	내용	거래 방식	내용	
☐ 사전송금방식 Usance 송금	수입기업인 본인이 거래 상대방인 수출기업과 사전송금 방식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, 선적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은행에 수출기업 앞 수입대금 지급 및 기간에 대한 신용공여를 신청하는 거래 방식 (단, 사전송금방식을 선택하면 아래 사후송금방식도 거래 할 수 있음)	☐ 사전송금방식 Usance 송금	수입기업인 본인이 거래 상대방인 수출기업과 사전송금 방식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, 선적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은행에 수출기업 앞 수입대금 지급 및 기간에 대한 신용공여를 신청하는 거래 방식 (단, 사전송금방식을 선택하면 아래 사후송금방식도 거래 할 수 있음)	
☐ 사후송금방식 Usance 송금	수입기업인 본인이 거래 상대방인 수출기업과 사후송금 방식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, 선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은행에 수출기업 앞 수입대금 지급 및 기간에 대한 신용공여를 신청하는 거래 방식	☐ 사후송금방식 Usance 송금	수입기업인 본인이 거래 상대방인 수출기업과 사후송금 방식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, 선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은행에 수출기업 앞 수입대금 지급 및 기간에 대한 신용공여를 신청하는 거래 방식	

제 1 조 (용어의 정의) (생 략)	제 1 조 (용어의 정의) (좌 등)	
제 2 조 (거래조건) ①(생략) ②본인은 Usance 송금 가능 통화가 미합중국법화, 유럽연합 유로화, 일본국법 화임을 확인합니다. ③~⑫ (생략)	제 2 조(거래조건) ①(좌등) ②본인은 Usance 송금 가능 통화가 미합중국법화, 유럽연합 유로화, 일본국 법화, 중화인민공화국법화임을 확인합니다. ③~⑫ (좌등)	송금 가능 통화 추가에 따른 변경
제 3 조 (거래 신청 및 취소) ~ 제 6 조 (신청 및 조건변경 수수료 부과) (생 략)	제 3 조 (거래 신청 및 취소) ~ 제 6 조(신청 및 조건변경 수수료 부과) (좌 등)	
제 7 조 (인수수수료 납부) ① 본인은 은행의 Usance 송금 이용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인수수수료를 납 부하여야 합니다. * 인수수수료 = 해외인수은행 인수금액 x 인수수수료율(연) x 보증기간 / 360 x 매매기준율(미달러화, 유로화) = 해외인수은행 인수금액 x 인수수수료율(연) x 보증기간 / 365 x 매매기준율(일본 엔화) * 보증기간 = 해외인수은행 인수 일자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일수 * 인수수수료율(연) : 신용등급에 따른 인수수수료율 (영업점 게시물 및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) ②(생략)	제 7 조 (인수수수료 납부) ① 본인은 은행의 Usance 송금 이용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인수수수료를 납 부하여야 합니다. * 인수수수료 = 해외인수은행 인수금액 x 인수수수료율(연) x 보증기간 / 360 x 매매기준율(미달러화, 유로화, 중국위안화) = 해외인수은행 인수금액 x 인수수수료율(연) x 보증기간 / 365 x 매매기준율(일본 엔화) * 보증기간 = 해외인수은행 인수 일자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일수 * 인수수수료율(연) : 신용등급에 따른 인수수수료율 (영업점 게시물 및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) ②(좌등)	인수수수료 산정방법에 위안화 추가
제 8 조 (상환) ~ 제 11 조 (그 밖의 처리기준) (생 략)	제 8 조 (상환) ~ 제 11 조(그 밖의 처리기준) (좌 등)	